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2013. 9. 13

에스에이치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목 차



1.공급현황_	1
2.신청자격_	5
3.입주자 선정_	10
4.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_	21
5.신청접수일정(인터넷청약)_	25
6.청약신청 및 심사서류 제출안내_	26
7.서류심사 대상자 발표_	28
8.동호추첨 및 당첨자 발표_	32
9.계약일시 및 구비서류_	33
10.유의사항_	34
11.임대신청 문의_	35
12.건본주택 및 현장안내_	36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SH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은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으로 임차권의 양도 · 전대 · 알선 행위는 임대주택법에 위법한 행위로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 장기전세주택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접수 받습니다. 다만,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고객에 한하여 공사에 설치된 인터넷 청약 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고, 방문인터넷 신청의 경우 대기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가급적 가정 등에서 인터넷청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기전세주택은 공급유형이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로 청약하시는 고객께서는 본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청약과 정에서 불이익(가점사항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현황 (단독세대주는 신청불가. 단, 금화는 50㎡미만 주택 신청 가능)

단지명 (위 치)	신청 유형 (전용)	공급호수					전세금액(천원)			세대당 계약면적(㎡)				난방 방식	입주 (예정)
		계	일반공급		우선/ 특별 공급	도시계획 철거민 특별공급	계	계약금 (계약시) 20%	잔금 (입주시) 80%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일반	고령자											
계		3,595	1,415	306	1,832	42									
신내3-1 (중랑구 신내동)	59㎡	287	60	32	194	1	115,490	23,098	92,392	59.60	25.55	36.24	121.39	개별 난방	'14.06
	84㎡	42	31	2	7	2	180,800	36,160	144,640	84.65	34.10	51.48	170.23		
	101㎡	38	38	-	-	-	194,400	38,880	155,520	101.65	40.86	61.82	204.33		
마곡4 (강서구 마곡동)	59㎡	84	26	6	52	-	170,400	34,080	136,320	59.79	22.08	50.49	132.36	지역 난방	'14.06
마곡5 (강서구 마곡동)	84㎡	34	26	2	6	-	204,000	40,800	163,200	84.95	27.12	64.55	176.62	지역 난방	
마곡6 (강서구 마곡동)	59㎡	382	76	34	272	-	170,400	34,080	136,320	59.79	21.13	40.49	121.41	지역 난방	
	84㎡	246	185	-	61	-	204,000	40,800	163,200	84.88	28.45	57.49	170.82	지역 난방	

단지명 (위 치)	신청 유형 (전용)	공급호수					전세금액(천원)			세대당 계약면적(m ²)				난방 방식	입주 (예정)
		계	일반공급		우선/ 특별 공급	도시계획 철거민 특별공급	계	계약금 (계약시) 20%	잔금 (입주시) 80%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일반	고령자											
마곡7 (강서구 마곡동)	59m ²	113	30	-	83	-	170,400	34,080	136,320	59.79	18.70	38.65	117.14	지역 난방	
	84m ²	144	107	-	35	2	204,000	40,800	163,200	84.79	24.49	54.67	163.95		
마곡15 (강서구 마곡동)	59m ²	350	75	32	243	-	170,400	34,080	136,320	59.79	23.03	45.25	128.07	지역 난방	
	84m ²	106	80	-	26	-	204,000	40,800	163,200	84.95	30.76	64.28	179.99		
세곡2-3 (강남구 울현동)	59m ²	482	89	75	313	5	224,000	44,800	179,200	59.97	25.10	36.64	121.71	개별 난방	'14.03
	84m ²	180	102	40	33	5	276,000	55,200	220,800	84.85	33.45	51.84	170.14		
세곡2-4 (강남구 울현동)	84m ²	110	64	22	21	3	276,000	55,200	220,800	84.85	28.83	54.52	168.20	개별 난방	
내곡1 (서초구 내곡동)	59m ²	142	36	16	90	-	241,600	48,320	193,280	59.94	20.76	41.56	122.26	개별 난방	'14.08
	84m ²	73	53	3	16	1	293,600	58,720	234,880	84.41	28.15	58.53	171.09		
내곡3 (서초구 내곡동)	59m ²	136	31	16	89	-	241,600	48,320	193,280	59.96	22.15	40.26	122.37	개별 난방	'14.06
	84m ²	26	24	2	-	-	293,600	58,720	234,880	84.41	30.39	56.73	171.53		
내곡5 (서초구 내곡동)	59m ²	152	37	22	91	2	241,600	48,320	193,280	59.96	20.52	42.50	122.98	개별 난방	'14.05
양재2 (서초구 양재동)	59m ²	228	46	-	175	7	215,250	43,050	172,200	59.77	24.89	31.59	116.25	개별 난방	'14.06
	84m ²	114	75	-	25	14	292,000	58,400	233,600	84.97	32.40	44.92	162.29		
	114m ²	48	48	-	-	-	368,000	73,600	294,400	114.78	43.22	60.69	218.69		
서초네 이쳐힐1 (서초구 우면동)	49m ²	22	22	-	-	-	168,000	33,600	134,400	49.87	15.48	45.86	111.21	개별 난방	'14.01
	84m ²	7	7	-	-	-	257,600	51,520	206,080	84.78	25.47	77.97	188.22		
	114m ²	3	3	-	-	-	396,000	79,200	316,800	114.71	33.97	105.50	254.18		
역삼3차 아이파크 (강남구 역삼동)	59m ²	11	11	-	-	-	366,400	73,280	293,120	59.78	23.14	44.65	168.2	지역 난방	'14.02
고덕리 엔파크1 (강동구 강일동)	114 m ²	1	1	-	-	-	284,000	56,800	227,200	114.92	36.84	64.72	216.48	지역 난방	'14.01
고덕리 엔파크2 (강동구 강일동)	84m ²	1	1	-	-	-	223,500	44,700	178,800	84.96	26.07	45.81	156.84	지역 난방	'14.01

단지명 (위 치)	신청 유형 (전용)	공급호수					전세금액(천원)			세대당 계약면적(m ²)				난방 방식	입주 (예정)
		계	일반공급		우선/ 특별 공급	도시계획 철거민 특별공급	계	계약금 (계약시) 20%	잔금 (입주시) 80%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일반	고령자											
고덕리 엔파크3 (강동구 강일동)	59m ²	1	1	-	-	-	112,120	22,424	89,696	59.83	19.43	29.57	108.83	지역 난방	'14.01
목동리 본타워 (중랑구 목동)	59m ²	4	4	-	-	-	152,000	30,400	121,600	59.95	28.11	34.27	122.33	지역 난방	'14.01
발산3 (강서구 내발산동)	84m ²	6	6	-	-	-	198,750	39,750	159,000	84.53	24.38	35.61	144.52	지역 난방	'14.01
상암월드 컵파크11 (마포구 상암동)	84m ²	1	-	1	-	-	228,000	45,600	182,400	84.89	29.42	46.69	161.00	지역 난방	'14.01
세곡리 엔파크2 (강남구 세곡동)	84m ²	1	1	-	-	-	244,000	48,800	195,200	84.97	31.75	60.63	177.35	개별 난방	'14.01
세곡리 엔파크3 (강남구 세곡동)	84m ²	1	1	-	-	-	244,000	48,800	195,200	84.96	33.48	65.15	183.59	개별 난방	'14.01
신정이펜 하우스1 (양천구 신정동)	59m ²	1	1	-	-	-	121,120	24,224	96,896	59.83	18.38	36.96	115.17	지역 난방	'14.01
신정이펜 하우스3 (양천구 신정동)	59m ²	2	2	-	-	-	113,670	22,734	90,936	59.88	23.38	43.95	127.21	지역 난방	'14.01
은평1지구 (은평구 진관동)	59m ²	7	7	-	-	-	124,470	24,894	99,576	59.91	40.87	36.27	137.05	지역 난방	'14.01
장지6 (송파구 장지동)	84m ²	3	3	-	-	-	252,000	50,400	201,600	84.94	20.52	41.27	146.73	개별 난방	'14.01
천왕이펜 하우스5 (구로구 천왕동)	59m ²	1	-	1	-	-	119,690	23,938	95,752	59.95	24.54	29.37	113.86	개별 난방	'14.01
	114m ²	1	1	-	-	-	192,000	38,400	153,600	114.85	28.82	56.24	199.91		
강서동부센 트라빌4차 (강서구 공항동)	59m ²	1	1	-	-	-	168,000	33,600	134,400	59.96	15.62	30.25	105.83	개별 난방	'14.01

단지명 (위 치)	신청 유형 (전용)	공급호수					전세금액(천원)			세대당 계약면적(m ²)				난방 방식	입주 (예정)
		계	일반공급		우선/ 특별 공급	도시계획 철거민 특별공급	계	계약금 (계약시) 20%	잔금 (입주시) 80%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일반	고령자											
강서센 트레빌3차 (강서구 방화동)	59m ²	1	1	-	-	-	160,000	32,000	128,000	59.83	21.07	38.04	118.94	개별 난방	'14.01
청계한신 휴플러스 (동대문구 답십리동)	59m ²	2	2	-	-	-	212,800	42,560	170,240	59.74	20.82	35.82	116.38	개별 난방	'14.01

※ 주택구조는 모든 단지 철근콘크리트 벽식 또는 라멘조 구조임. (단지별 최고층수 및 평형별 해당중, 평면은 단지별 (홈페이지)팸플릿 참조)

※ 위 표상 고덕리엔파크1단지 이하는 공가공급 단지임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층(1~3층)에도 배정될 수 있음. **공동주택 특 성상 층간소음,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소음, 저층배정 등을 사유로 동호변경 등은 불가하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함.**

○ 1세대(본인+배우자+세대원) 1주택만 신청(재건축매입형을 제외한 전용85m²초과형 일반공급은 1인 1 주택 신청가능)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 위 주택면적은 동일단지내 일반적인 1개 타입의 면적으로 각 타입별로 세부면적은 상이하며 **단지별 로 타입 구분없이 신청접수하여 전산추첨으로 세부타입 결정 및 동호배정되고, 동일단지내 타입별 면 적 등은 상이하나 전세금액은 동일함.**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면적임.

○ 위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통보함.

○ 공급세대수에서 우선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5항 내지 제10항, 제32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우선공급대상자에게 배정되는 세대수임.

○ 입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발코니샷시가 설치된 세대의 경우 발코니창, 콘크리트 난간, 천장등에 실내외 온도차이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특히, 빨래건조, 가슴기 등 사용시에는 수시로 샷시창을 열 어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켜 결로를 예방하여야 함.

○ 고령자주택 일반공급은 1층과 2층에 고령자에게 편리한 설계와 시설을 갖춘 고령자용 임대주택(욕실 미닫이문, 욕실 및 현관 단차 2cm, 높낮이조절 세면대설치, 스위치 낮게 설치 등)으로 건립됨.

○ 『**도시계획철거민특별공급**』은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거 도시 계획철거민에게 특별공급되는 물량임.

○ **잔여공간**은 기존 입주자의 퇴거, 미계약 등으로 발생한 공간을 재공급하는 것으로 도배, 장판 등 일 부 마감재의 파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손부분은 공사에서 교체하나 각 마감재 전체의 교체

를 원할 경우에는 입주자 본인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함. 공사 현황은 당첨자 발표후 계약체결전 까지 해당주택에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음.

- 아울러,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잔여공가 공급단지의 경우에도** 별도의 유의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공급단지별, 해당동호별로 인근에 위치한 철도, 도로, 유흥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인근 혐오시설에 의한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후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단지별로 내외부 환경(생활여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후 청약** 바라며, 당해 택지조성사업 준공이전에는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각급 학교 개교시기는 입주시기보다 늦어질 수 있으니 학생배정, 개교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입주에 불편이 없도록 유의.
- 신규 단지 및 잔여공가(재공급단지)의 기타 유의사항은 SH공사에서 배부하는 공고안내문이나 SH공사 홈페이지를 꼭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 기준임.
- 향후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급세대수, 공급면적, 공급타입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임대보증금은 재계약시 인상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가. 공통사항

- ▶ **단독세대주(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본인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의 주택만 신청가능함.**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이 ①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 예외로 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시 해당 구에 공급되는 주택 중 전용면적 40㎡이하의 주택이 없는 경우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장애등급 2급이상 및 국가유공자 3급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장애등급 3급중 뇌병변장애인 · 시각장애인 · 지적장애인 · 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 · 심장장애인 · 호흡기장애인 · 간질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에는 단독세대주라도 **전용면적 50㎡ 미만의 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 신청시 「**저층(1,2층) 배정**」 을 희망(신청)하면 **공급 가능한 세대수 범위내에서 저층(1,2층)으로 동호배정**하되 신청자가 공급세대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전산추첨하고, 탈락자는 저층 미신청자와 동일하게 동호배정(**고령자주택 신청자 제외**)하며, 저층(1~2층) 희망자가 배정세대에 미달할 경우 저층 미신청자도 저층에 배정(※ 당첨자중에서 저층배정되므로 당첨여부와는 관계없음)

나. 전용59㎡형

(신내3-1, 고덕리엔파크3, 묵동리본타워, 신정이펜하우스1,3, 은평1지구, 천왕이펜하우스5)
 입주자 모집공고일(2013.09.13)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 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 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 득	가구원수	3인이하가구	4인가구	5인이상가구
	월평균 소득기준	3,144,650원이하	3,512,460원이하	3,688,050원이하
부동산	<p>소득산정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동일세대원인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하되,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제외)의 합이며, 이 경우 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 월평균소득은 위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별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확인하는 소득으로서 근로소득(상시·일용·자활·공공),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 재산소득(임대·이자),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을 말함. ※ 소득항목별 조사항목은 공고문 후단 별표1 참조 ※ 위 가구원(세대원) 기준은 이하 부동산 등 자산보유 기준에도 동일하게 적용 <p>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건축물가액 : 공시가격, 토지가액 : 소유면적×공시지가 > ※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p> <p>① 공시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에 따른 가격. 다만,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p> <p>② 토지가액(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토지가액을 포함)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p>※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가액(건물 및 토지가액) 포함.</p>			

자동차	<p>현재가치 기준 2,464만원 이하[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 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단,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 보유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기준으로 산정]</p> <p>※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p>
------------	--

다. 전용59㎡형(마곡4,6,7,15, 세곡2-3, 내곡1,3,5, 양재2), 전용49㎡형(서초네이처힐1)
 입주자 모집공고일(2013.09.13)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 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3인이하가구	4인가구	5인이상가구
	월평균소득기준	4,492,360원이하	5,017,800원이하	5,268,640원이하
	소득산정 기준	기타 세부내용은 위 “2. 신청자격중 나항” 의 전용59㎡형 소득산정 기준 참조		
부동산	<p>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건축물가액 : 공시가격, 토지가액 : 소유면적×공시지가 ></p> <p>※ 부동산 소유기준관련 기타 세부내용은 “2. 신청자격중 나항” 의 전용59㎡형 부동산소유 기준 참조</p>			
자동차	<p>현재가치 기준 2,464만원 이하[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단,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 보유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중 높은 가액기준으로 산정]</p> <p>※ 자동차 소유기준관련 기타 세부내용은 “2. 신청자격중 나항” 의 전용59㎡형 자동차소유 기준 참조</p>			

라. 전용 84㎡형(신내3-1, 마곡5,6,7,15, 세곡2-3,4, 내곡1,3, 양재2, 서초네이처힐1, 고덕리엔파크2, 상암월드컵파크11, 발산3, 세곡리엔파크2,3, 장지6)
 입주자 모집공고일(2013.09.13)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 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 득	가구원수	3인이하가구	4인가구	5인이상가구
	월평균소득기준	5,390,830원이하	6,021,360원이하	6,322,370원이하
	소득산정 기준	기타 세부내용은 위 “2. 신청자격중 나항” 의 전용59㎡형 소득산정 기준 참조		
부동산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 건축물가액 : 공시가격, 토지가액 : 소유면적×공시지가 > ※ 부동산소유기준관련 기타 세부내용은 “2. 신청자격중 나항” 의 전용59㎡형 부동산 소유 기준 참조			

마. 전용85㎡초과형 (신내3-1, 양재2, 서초네이처힐1, 고덕리엔파크1, 천왕이편하우스5)
 입주자 모집공고일(2013.09.13)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 만20세 미만 포함)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 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 득	가구원수	3인이하가구	4인가구	5인이상가구
	월평균소득기준	6,738,540원이하	7,526,700원이하	7,902,970원이하
	소득산정 기준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동일세대원인 “신청자의 직계존비속과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의 합이며, 이 경우 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3.4자녀이상 가구 특별공급” 은 태아수 미인정). ※ 위 가구원(세대원) 기준은 이하 부동산 등 자산보유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 ○ 기타 세부사항은 위 “2. 신청자격중 나항” 의 전용59㎡형 소득산정 기준 참조		
부동산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 건축물가액 : 공시가격, 토지가액 : 소유면적×공시지가 > ※ 부동산소유기준관련 기타 세부내용은 “2. 신청자격중 나항” 의 전용59㎡형 부동산 소유 기준 참조			

바. 재건축 매입 전용 59㎡형

(역삼3차아이파크(역삼성보재건축), 강서동부센트리빌4차, 강서센트레빌3차, 청계한신휴플러스)
 입주자 모집공고일(2013.09.13)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 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 득	가구원수	3인이하가구	4인가구	5인이상가구
	월평균소득기준	4,492,360원이하	5,017,800원이하	5,268,640원이하
	소득산정 기준	기타 세부내용은 위 “2. 신청자격중 나항” 의 전용59㎡형 소득산정 기준 참조		
부동산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건축물가액 : 공시가격, 토지가액 : 소유면적×공시지가 > ※ 부동산 소유기준관련 기타 세부내용은 “2. 신청자격중 나항” 의 전용59㎡형 부동산소유 기준 참조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464만원 이하[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 가액 등을 활용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 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단,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 보유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중 높은 가액기준으로 산정] ※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 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 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3 입주자 선정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경우 가입형태(본인선택)에 따라 해당주택에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청약전에 해당 입주자 저축가입은행에 반드시 확인(금융결제원에서 운영중인 인터넷 홈페이지 www.apt2you.or.kr, 다만, 국민은행가입자는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에서 순위확인서 발급 가능〉

가. 일반공급(일반주택)

아파트명	입 주 자 선 정 방 법			
· 전용49㎡형 (서초네이처힐1)	① 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초과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가구원수	3인이하가구	4인가구	5인이상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3,144,650원이하	3,512,460원이하	3,688,050원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4,492,360원이하	5,017,800원이하	5,268,640원이하
	② 위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초구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관악구, 동작구, 용산구, 강남구에 거주하는 자 - 3순위 : 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해당 입주자격은 충족해야 함) ※ ②항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의 “4.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중 나항” 에 의함			
· 전용59㎡형 (마곡4,6,7,15, 세곡2-3, 내곡 1,3,5, 양재2)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자 ②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자 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초과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함			
	가구원수	3인이하가구	4인가구	5인이상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3,144,650원이하	3,512,460원이하	3,688,050원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4,492,360원이하	5,017,800원이하	5,268,640원이하
	※ 위 소득범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4.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중 나항” 에 의함			

<p>· 전용59㎡형, 84㎡형 (신내3-1, 고덕리엔파크3, 목동리본타워, 세곡리엔파크2,3, 신정아펜하우스1,3, 은평1지구, 장지6, 마곡5,6,7,15, 세곡2-3,4, 내곡1,3, 양재2, 서초네이처힐1, 발산3, 고덕리엔파크2)</p>	<p>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자 ②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자 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입주자선정은 다음의 “4.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중 가항 또는 나항” 에 의함</p>
<p>·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역삼3차아이파크 <역삼성보재건축>, 강서동부센트럴빌4차, 강서센터빌, 청계한신휴플러스)</p>	<p>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무주택기간과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기간이 각각 1년이상인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입주자선정은 다음의 “4.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중 나항” 에 의함</p>

나. 일반공급(고령자 주택)

(전용59㎡형 : 신내3-1, 천왕이펜하우스5)

(전용84㎡형 : 신내3-1, 마곡5, 세곡2-3,4, 내곡1,3, 상암월드컵파크11)

구 분	입 주 자 선 정 방 법
<p>신청자격</p>	<p>만65세 이상('48.09.13 이전)인 서울시거주 무주택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다만, 주택의 신청규모별로 위 “2. 신청자격 중 나항 또는 라항” 을 충족하여야 함 ※ 만65세이상 고령자 청약이 공급세대수에 미달할 경우 만65세미만 만60세이상인 무주택세대주로서 고령자용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가진 자에게 공급(각 청약기간은 청약일정 참조)</p>
<p>신청자가 공급세대수 초과시 입주자 선정</p>	<p>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전산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세대주 나이 - 만75세 이상 : 3점, - 만70세 이상 만75세 미만 : 1점 ② 세대원수가 2인 이상인 경우(임신중인 태아수 포함) : 1점 ※ 신청자를 제외하고, 신청자와 분리배우자의 동일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신청자와 동일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p>

	③ 서울시 거주기간 - 10년 이상 : 3점, - 5년 이상 10년 미만 : 2점, - 1년 이상 5년 미만 : 1점 ④ 사회 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 2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1점 ⑤ 장애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동일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에 한함) 전원 해당) - 제2급 이상 : 2점, - 제3급 이하 : 1점
--	---

다. 일반공급(고령자 주택) (전용59㎡형 : 마곡4,6,15, 세곡2-3, 내곡1,3,5)

구 분	입 주 자 선 정 방 법			
신청자격	만65세 이상('48.09.13 이전)인 서울시거주 무주택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다만, 주택의 신청규모별로 위 “2. 신청자격 중 다항” 을 충족하여야 함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초과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가구원수	3인이하가구	4인가구	5인이상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3,144,650원이하	3,512,460원이하	3,688,050원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4,492,360원이하	5,017,800원이하	5,268,640원이하
	※ 만65세이상 고령자 청약이 공급세대수에 미달할 경우 만65세미만 만60세이상인 무주택세대주로서 고령자용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가진 자에게 위와 동일한 방법에 따라 공급(각 청약기간은 청약일정 참조)			
신청자가 공급세대수 초과시 입주자 선정	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전산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세대주 나이 - 만75세 이상 : 3점, - 만70세 이상 만75세 미만 : 1점 ② 세대원수가 2인 이상인 경우(임신중인 태아수 포함) : 1점 ※ 신청자를 제외하고, 신청자와 분리배우자의 동일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신청자와 동일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③ 서울시 거주기간 - 10년 이상 : 3점, - 5년 이상 10년 미만 : 2점, - 1년 이상 5년 미만 : 1점 ④ 사회 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 2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1점 ⑤ 장애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동일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에 한함) 전원 해당) - 제2급 이상 : 2점, - 제3급 이하 : 1점			

**라. 일반공급 (전용 101㎡형 : 신내3-1),
(전용 114㎡형 : 양재2, 서초네이처힐1, 고덕리엔파크1, 천왕이편하우스5)**

순위	입 주 자 선 정 방 법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중에서 유주택자는 당첨시 입주전까지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모두의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야 입주 가능함. · 같은 세대 안에서 2주택 이상 중복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선택하여 계약체결 하여야 함. ※ 청약가능여부 및 해당순위는 해당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반드시 신청전에 확인발급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가능 입주자저축 : 전용85㎡초과 102㎡이하 - 600만원, 전용102㎡초과 135㎡이하 - 1,000만원 ※ 입주자선정은 다음의 “4.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중 나항” 에 의함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한 후 2년이 경과되어 1순위 자격을 취득하고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금액에 도달한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청약자의 만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 는 1순위 청약 불가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한 자 · 1순위자 중 상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되는 자
3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마. 우선공급(전용59㎡형 : 신내3-1)

구분	입 주 자 선 정 방 법
장애인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5항) 장애인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5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내지 제2항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의 세대주에게 공급(다만, 아래의 ㉘항, ㉙항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 제외) 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48.09.13 이전)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부양여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하며 피부양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㉙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 단, 장애등급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하되 등급이 동일한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자 ④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1호에 의한 북한이탈 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자 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 ⑥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5년이상(경력포함)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장기근속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확인서” 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 해당지역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모집공고일부터 청약신청기간까지 발급(대상자여부는 청약전 미리 확인) ⑦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우선공급 대상자 해당여부는 우선공급 대상자 준비서류 참조) ⑧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입주자격(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무주택 및 소득요건 제외)을 충족하는 자 중 관할 시·군·구청에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 입소(입주) 확인서” 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자격확인관련 세부내용은 여성가족부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부여관련 지침” 에 의함) ⑨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⑩ 소년·소녀가정으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⑪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 48.09.13 이전) 고령자
<p>3자녀 세대 (주택공급규칙 제32조6항)</p>	<p>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민법상 미성년(만19세 미만 - 1994.09.14 이후 출생)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하되 태아수 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가 있는 자(아재혼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자(현 배우자포함)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p>
<p>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7항)</p>	<p>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에서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③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④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p>영구임대주택 입주자중 자격상실자 (주택공급규칙 제32조8항)</p>	<p>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계약자)중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세대주(※ 영구임대주택 입주여부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p>
<p>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9항)</p>	<p>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임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및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중 내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주.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9항의 자격으로 1회 이상 우선공급(계약)을 받은 자는 제외.</p>

※ 위 우선공급대상자중 입주자 선정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4.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중 가항” 에 의하여 선정함.

바. 우선공급(59㎡형 : 마곡4,6,7,15, 세곡2-3, 내곡1,3,5, 양재2)

구분	입 주 자 선 정 방 법
<p>장애인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5항)</p>	<p>위 “2. 신청자격 중 다항” 을 충족하는 아래의 세대주에게 공급 (다만, 아래의 ⑧항, ⑩항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 제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48.09.13이전)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부양여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하며 피부양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②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며 동 소득범위내에서는 장애등급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하되 가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 선정) ③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자 ④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자 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남북피해자 ⑥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5년이상(경력포함)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장기근속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확인서” 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 해당지역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모집공고일부터 청약신청기간까지 발급(대상자여부는 청약전 미리 확인)

	<p>⑦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우선공급 대상자 해당여부는 우선공급 대상자 준비서류 참조)</p> <p>⑧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입주자격(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무주택 및 소득요건 제외)을 충족하는 자 중 관할 시·군·구청에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 입소(입주) 확인서” 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자격확인관련 세부내용은 여성가족부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부여 관련 지침” 에 의함)</p> <p>⑨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p> <p>⑩ 소년·소녀가정으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p> <p>⑪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 48.09.13 이전) 고령자</p>
<p>3자녀 세대 (주택공급규칙 제32조6항)</p>	<p>위 “2. 신청자격 중 다항” 을 충족하는 자로서 민법상 미성년(만19세 미만 - 1994.09.14 이후 출생)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하되 태아수 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가 있는 자(아재혼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자(현 배우자포함)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p>
<p>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7항)</p>	<p>위 “2. 신청자격 중 다항” 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에서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자</p> <p>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p> <p>②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p> <p>③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p> <p>④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p>
<p>영구임대주택 입주자중 자격상실자 (주택공급규칙 제32조8항)</p>	<p>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계약자)중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세대주(※ 영구임대주택 입주여부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p>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9항)	위 “2. 신청자격 중 다항” 을 충족하는 자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임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및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중 LH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주.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9항의 자격으로 1회 이상 우선공급(계약)을 받은 자는 제외.
-------------------------------	--

※ 위 우선공급대상자중 입주자 선정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다음의 “4.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중 나항” 에 의하여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초과 100%이하인 세대에게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공급함.

사. 신혼부부 우선공급(전용59㎡형 : 신내3-1)

구 분	입 주 자 선 정 방 법(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 제10항)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2항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고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6회이상 납입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재혼 포함), 소득 심사시 임신중인 자녀수는 세대원에 포함.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이후 출생신고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관계 인정)로 판단하며,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 임신중인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및 태아수 확인 가능한 임신진단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임신진단서 제출)로 청약자격 여부 확인(※임신주수 및 태아수 기재된 진단서 제출하되 태아수 확인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 - 재혼한 경우에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입주자 선정순위	아래 순위에 따라 공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1순위 : 혼인기간이 3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②2순위 : 혼인기간이 3년초과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p>동일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p>	<p>동일순위내 경쟁시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p> <p>①미성년 자녀 수(태아수 포함)가 많은 자 ※ 재혼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자(현 배우자포함)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p> <p>②미성년 자녀 수(태아수 포함)가 동일할 경우 신청(청약)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순으로 선정하되, 연령이 같은 경우 전산추첨으로 입주자 선정</p>
<p>입주시 유의사항</p>	<p>임대주택 공급계약체결이후 신혼부부 우선공급 당첨자는 입주시까지 출산(또는 임신유지) 및 입양관련 입증서류(14일 이내 발급서류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입주 전 파양 등인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부부의 경우 출산증명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 유산낙태관련 진단서(임신주수 기재분)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아. 신혼부부 우선공급(전용59㎡형 : 마곡4,6,7,15, 세곡2-3, 내곡1,3,5, 양재2)

구 분	입 주 자 선 정 방 법(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 제10항)
<p>신청자격</p>	<p>위 “2. 신청자격 중 다항”을 충족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고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6회이상 납입한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재혼 포함), 소득 심사시 임신중인 자녀수는 세대원에 포함.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이후 출생신고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관계 인정)로 판단하며,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 임신중인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및 태아수 확인 가능한 임신진단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임신진단서 제출)로 청약자격 여부 확인(※임신주수 및 태아수 기재된 진단서 제출하되 태아수 확인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 - 재혼한 경우에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p>입주자 선정순위</p>	<p>아래 순위에 따라 공급함.</p> <p>①1순위 : 혼인기간이 3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p> <p>②2순위 : 혼인기간이 3년초과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p>

동일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동일순위내 경쟁시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초과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가구원수	3인이하가구	4인가구	5인이상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3,144,650원이하	3,512,460원이하	3,688,050원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4,492,360원이하	5,017,800원이하	5,268,640원이하
	②위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미성년 자녀 수(태아수 포함)가 많은 자 ※ 재혼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자(현 배우자포함)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			
	③미성년 자녀 수(태아수 포함)가 동일할 경우 신청(청약)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순으로 선정하되, 연령이 같은 경우 전산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입 주 시 유의사항	임대주택 공급계약체결이후 신혼부부 우선공급 당첨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또는 임신유지) 및 입양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입주 전 파양 등인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됨. - 임신부부의 경우 출산증명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 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 유산낙태관련 진단서(임신주수 기재분)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자. 우선공급(전용84㎡형 : 신내3-1, 마곡5,6,7,15, 세곡2-3,4, 내곡1, 양재2)

구분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노부모 부양자 (주택공급 규칙 제32조 5항1호)	신청 자격	위 “2. 신청자격 중 라항” 을 충족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 48.09.13 이전)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 부양여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하며 피부양자도 무주택이어야함.
	입주자 선정방법	다음의 “4.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중 나항” 적용하여 입주자 선정함.
3자녀 가구 (주택공급 규칙 제32조6항)	신청 자격	위 “2. 신청자격 중 라항”을 충족하는 자로서, 민법상 미성년(만19세 미만 - 1994.09.14 이후 출생)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하되, 태아수 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가 있는 자(아재혼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자(현 배우자포함)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
	입주자 선정방법	다음의 “4.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중 나항” 적용하여 입주자 선정함.

차. 우선공급 배정세대

▶ 공사건설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전용85㎡이하 주택)

단지명	유형 (전용)	계	우선공급 (전용60㎡이하)															우선공급 (전용60㎡초과 85㎡이하)		
			노부 모 부양 자	장 애 인	장 기 복 무 제 대 군 인	북 한 이 탈 주 민	남 북 해 자	중 소 기 업 근 로 자	비 정 근 로 자	가 정 폭 력 해 자	한 부 모 가 족	소 년 소 녀 가 정 등	65세 이 상 고 령 자	3자 녀 이 상 가 구	국 가 유 공 자	영 구 임 대 주 주 자 자 격 상 실 자	비 닐 간 이 물 주 자 등	신 혼 부 부	노부 모 부 양 자	3자 녀 이 상 가 구
합 계		1,832	12	53	12	53	34	34	53	34	53	12	12	206	206	58	142	628	42	188
신내3-1	59㎡	194	2	6	2	6	4	4	6	4	6	2	2	25	25	7	17	76	-	-
	84㎡	7	-	-	-	-	-	-	-	-	-	-	-	-	-	-	-	-	-	7
마곡4	59㎡	52	-	2	-	2	-	-	2	-	2	-	-	7	7	2	5	23	-	-
마곡5	84㎡	6	-	-	-	-	-	-	-	-	-	-	-	-	-	-	-	-	-	6
마곡6	59㎡	272	3	9	3	9	6	6	9	6	9	3	3	34	34	10	24	104	-	-
	84㎡	61	-	-	-	-	-	-	-	-	-	-	-	-	-	-	-	-	12	49
마곡7	59㎡	83	-	3	-	3	2	2	3	2	3	-	-	11	11	3	7	33	-	-
	84㎡	35	-	-	-	-	-	-	-	-	-	-	-	-	-	-	-	-	7	28
마곡15	59㎡	243	2	8	2	8	5	5	8	5	8	2	2	31	31	9	22	95	-	-
	84㎡	26	-	-	-	-	-	-	-	-	-	-	-	-	-	-	-	-	5	21
세곡2-3	59㎡	313	3	10	3	10	7	7	10	7	10	3	3	40	40	12	28	120	-	-
	84㎡	33	-	-	-	-	-	-	-	-	-	-	-	-	-	-	-	-	6	27
세곡2-4	84㎡	21	-	-	-	-	-	-	-	-	-	-	-	-	-	-	-	-	4	17
내곡1	59㎡	90	-	3	-	3	2	2	3	2	3	-	-	12	12	3	8	37	-	-
	84㎡	16	-	-	-	-	-	-	-	-	-	-	-	-	-	-	-	-	3	13
내곡3	59㎡	89	-	3	-	3	2	2	3	2	3	-	-	12	12	3	8	36	-	-
내곡5	59㎡	91	-	3	-	3	2	2	3	2	3	-	-	12	12	3	8	38	-	-
양재2	59㎡	175	2	6	2	6	4	4	6	4	6	2	2	22	22	6	15	66	-	-
	84㎡	25	-	-	-	-	-	-	-	-	-	-	-	-	-	-	-	-	5	20

○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및 제32조의 2에 의한 순위 및 배점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다만, 국가유공자 등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은 국가보훈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등에서 선정하여 통보한 순위에 의하되, 별도로 SH공사에 청약신청하여야 하며 기타 우선공급대상자는 해당 우선공급항목을 체크하여 청약신청하여야 함. 이 경우에도 단독세대주는 59㎡이상 주택형 신청 불가)

○ 우선(특별)공급 신청미달로 인한 잔여세대는 일반공급 대상으로 전환됨



4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가. 전용59㎡형 : 신내3-1, 고덕리엔파크3, 목동리본타워, 신정이펜하우스1,3, 은평1지구

1) 일반공급의 경우 제1~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태아 포함) 3명 이상을 둔 세대주 중 미성년인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자녀수가 같거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와 우선공급의 경우 아래의 2)호 및 3)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한 사유로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으며,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전산추첨에 의함.

2)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5,6,8,9항) 가점기준

구 분	3점	2점	1점
① 세대주 나이	50세이상	40세이상 50세미만	30세이상 40세미만
② 부양 가족수(태아의 수 포함)	3인이상	2인	1인
③ 서울특별시 거주기간(만20세 이후)	5년이상	3년이상 5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④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3점			
⑤ 미성년(만19세 미만)자녀(태아의 수 포함)의 수	3자녀이상	2자녀	-
⑥ 청약저축 납입 횟수	60회이상	48회이상 60회미만	36회이상 48회미만
⑦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⑧ 사회취약계층 : 3점 (세부내용은 다음의 ※표 사회취약계층 가점사항 참조)			
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중 1년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자 : 3점			

※ ④,⑦,⑧의 가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5항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 제외.

※ 신혼부부 우선공급의 경우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거 입주자 선정.

※ 부양가족수(신청자 제외)는 배우자, 신청자(분리배우자포함)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포함) 및 신청자의 형제자매(만20세 미만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함.

- ※ 서울특별시 거주기간은 만20세 이후부터 기산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서울시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하여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된 경우 말소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 ※ 미성년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의거 산정. 다만, 이(재)혼인 등의 경우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신청자(현 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
-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의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해당기간을 계속하여 부양해야 함
- ※ 중소기업중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제조업 확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의 제조업으로 확인하며, 2개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 기준(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종된 사업장은 제외).
- ※ 영구임대주택 거주여부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에 의함.
- ※ **유의사항(중요함)**

임신중인 자녀(입양포함)를 부양가족, 미성년자녀로 인정받아 당첨(예비자포함)된 자는 입주시까지 출산(또는 임신유지) 및 입양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 등인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됨.(입증자료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에 한함)

3) 감점 산정기준 : 2009.11.30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의거 장기전세주택을 계약한 자에 해당함.

감 점 기 준	감점 점수
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
2.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8점
3. 1호 내지 2호 이외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6점

- ※ 신청자 및 배우자(분리 배우자 포함)가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관계법령에 의한 임차권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인 포함)에 한하며,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감점대상인 경우에는 신청자기준으로 감점(입주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적용받고 입주한 자가 입주 기준을 초과하여 퇴거되는 경우에는 감점적용 배제)

※ 사회취약계층 가점내용(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32조 제12항 8호, 아래 항목중 1개 항목만 인정)

가. 다음에 각호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에 의한 수급자(단, 수급자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제외)
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5. 「아동복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6. 위 1호 내지 5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서울시장)이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 나. 전용49㎡형 : 서초네이처힐1 / 전용59㎡형 : 마곡4,6,7,15, 세곡2-3, 내곡1,3,5, 양재2
 전용84㎡형 : 신내3-1, 마곡5,6,7,15, 세곡2-3,4, 내곡1,3, 양재2, 서초네이처힐1,
 고덕리엔파크2, 발산3, 세곡리엔파크2,3, 장지6
 전용101㎡형 : 신내3-1/전용114㎡형 : 양재2, 서초네이처힐1, 고덕리엔파크1, 천왕이펜하우스5
 재건축매입형 : 역삼3차아파트(역삼성보재건축), 강서동부센트럴빌4차, 강서센트럴빌, 청계한신휴플러스

1) 일반공급, 우선공급 가점기준

구 분	5점	4점	3점	2점	1점
① 서울특별시 거주기간 (만20세 이후)	10년이상	7년이상 10년미만	5년이상 7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3년미만
② 무주택기간(만 30세이후 또는 혼인신고일중 앞선 날짜 기준)	10년이상	7년이상 10년미만	5년이상 7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3년미만
③ 세대주(신청자) 나이	50세이상	45세이상 50세미만	40세이상 45세미만	35세이상 40세미만	35세미만
④ 부양가족수(태아의 수 포함)	5인이상	4인	3인	2인	1인
⑤ 미성년(만19세미만) 자녀(태아의 수 포함)의 수	5자녀이상	4자녀	3자녀	2자녀	1자녀
⑥ 청약저축 납입횟수 (전용85㎡이하)	96회이상	84회이상 96회미만	72회이상 84회미만	60회이상 72회미만	24회이상 60회미만
⑦ 해당 주택형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가입기간 (전용85㎡초과)	5년이상	4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2년미만

※ ⑥, ⑦의 가점은 공사건설 장기전세주택에 한하여 인정됨 (재건축/재개발 장기전세주택에는 미적용)

⑧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 2점

- ※ 신혼부부 우선(특별)공급의 경우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거 입주자 선정.
- ※ 서울특별시 거주기간은 만20세 이후부터 기산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서울시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하여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된 경우 말소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 의미함.
- ※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4호(별표1)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무주택 기간 산정시 주택소유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공사건설 전용85㎡초과)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4호의 기준을 적용하고, 그 외 주택 공급의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을 적용.
- ※ 부양가족수(신청자 제외)는 배우자, 신청자(분리배우자포함)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포함) 및 신청자의 형제자매(만20세 미만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함(단, 85㎡초과(공공임대) 주택형의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 미성년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의거 산정. 다만, 이(재)혼인 등의 경우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신청자(현 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
- ※ ⑥의 가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공사건설 85㎡초과)에 따른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제외
- ※ ⑦의 가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공사건설 85㎡이하)에 따른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제외
- ※ ⑥, ⑦의 가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3항 및 「주택법」 제38조의6제2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제외(**서울시매입 재건축/재개발 임대아파트등**)
-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의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해당기간을 계속하여 부양해야 함
- ※ **유의사항(중요함)**

임신중인 자녀(입양포함)를 부양가족, 미성년자녀로 인정받아 당첨(예비자포함)된 자는 입주시까지 출산(또는 임신유지) 및 입양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 등인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됨.(입증자료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에 한함)

2) 감점 산정기준 : 2009.11.30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의거 계약한 자에 해당함.

감 점 기 준	감점 점수
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
2.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8점
3. 1호 내지 2호 이외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6점

- ※ 신청자 및 배우자(분리 배우자 포함)가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관계법령에 의한 임차권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인 포함)에 한하며,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감점대상인 경우에는 신청자기준으로 감점(입주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적용받고 입주한 자가 입주 기준을 초과하여 퇴거되는 경우에는 감점적용 배제).

3) 상기 1)호 및 2)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녀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전산추첨에 의한다.



5 신청접수일정(인터넷청약)

구 분	접 수 일 정	대 상 자	신청장소
인터넷·방문 청약접수	2013.09.30(월) ~10.02(수) (10:00 ~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자 ● 서초네이처힐1단지(전용49㎡형) 신청자중 월평균소득 70% 이하자로서 서초구 또는 관악구, 동작구, 용산구, 강남구 거주자 ● 고령자주택 만65세이상인 자 	<p>인터넷청약 (www.shift.or.kr) 또는 (www.i-sh.co.kr)</p> <p>방문(인터넷)청약 SH공사 사옥 (지하철 3호선 대청역)</p>
	2013.10.04(금) (10:00 ~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공급 2순위자 ● 서초네이처힐1단지(전용49㎡형) 신청자중 월평균소득 70% 이하자로서 위 지역이 외의 서울시 거주자 ● 고령자주택 만60세이상 만65세미만인자 	
	2013.10.07(월) (10:00 ~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공급 3순위자 ● 서초네이처힐1단지(전용49㎡형) 신청자중 월평균소득 70%초과~100%이하자 	

- ※ 청약접수는 인터넷으로 접수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사 방문(인터넷) 접수시 장시간 대기할 수 있으니 가정 등에서 인터넷 청약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의 가정,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일반인터넷청약은 각 순위별 청약 첫날 09:00부터 청약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첫날 오전은 인터넷접수 폭주로 청약에 어려움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다른 시간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방문인터넷 접수는 위 접수일정에 표시된 시간에만 운영합니다. 특히, 방문인터넷 접수의 경우 1순위 청약 첫째 날은 방문고객이 많아 대기시간이 매우 길 것으로 예상되오니 2~3일째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선순위 신청자수가 공급세대의 250%를 초과할 경우에는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 각 순위별 청약 접수결과는 각 순위별 청약접수 종료 익일 오전 09:00 SH공사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 일반인터넷 청약은 각 순위별 최종 청약일 마감시간(17:00)까지만 청약할 수 있으니 반드시 동 시간 이전에 청약완료하시기 바랍니다.



6 청약신청 및 심사서류 제출안내

- ※ 청약접수는 **인터넷 청약으로만 접수**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장애인, 고령자 등 인터넷사용이 어려운 고객은 공사에 방문하여 공사에 설치된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공급세대수의 상위 220%내외(우선공급은 140%내외)에 해당하는 신청인에 대하여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발표하며,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아래의 서류 제출기간내에 직접방문하여 해당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해당기간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자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서류제출기간내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유의바랍니다.
- ※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수 완료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가. 인터넷청약안내

"인터넷 청약, 10분에 OK!", "24시간 가능한 인터넷 청약"

- 각 순위별 최종청약일 마감시간(17:00)까지만 운영 -

〈SH공사 장기전세주택 신청은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로만 청약접수 받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로 청약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인터넷 청약은 대기시간이 장시간(3~6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가급적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신문광고나 공사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내용을 정확히 인지한 후 가급적 해당서류를 사전에 발급받아 확인한 후 신청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택공급신청서(해당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or.kr>에서 발급, 다만 국민은행가입자는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는 청약기간이후에는 해당은행에서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공급신청서 또는 순위확인서(기타 대체서류 미인정) 미제출자는 청약취소 또는 탈락되오니 반드시 사전에 주택공급신청서를 발급받아 준비하여야 하며, 주택청약종합

저축 가입자의 경우 가입당시(혹은 청약전)에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주택에 청약가능여부가 결정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입주자 저축 가입은행 방문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2you.or.kr)에서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 다만, 전용85㎡이하 주택 신청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됨.

○ 인터넷 신청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회원가입 후, 해당 접수일에 공인인증서 및 소득금액 등을 확인 후 SH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

※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은 I-PIN(안전행정부 “공공 I-PIN센터” 에서 관리) 또는 공인인증서 등으로 인증되오니, 사전에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확인하시어 청약 시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 신청순서 : SH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www.i-sh.co.kr)에 접속 →회원 로그인 → 인터넷청약에서 해당 아파트 선택 → 서약서 체크 → 청약신청서 작성 → 작성청약서 최종 확인 → 공인인증서 인증확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기간내 청약취소후 재청약시에도 반드시 확인 바람, 이동전화 확인메시지는 통신사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 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을 위하여 은행에서 발급한 인증서나, 5대인증기관(금융결제원,증권전산원,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인터넷 신청 가능

※ 인터넷청약을 위한 사전준비 사항 : 홈페이지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발급/소지, 주택공급 신청서 발급(해당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or.kr), 단, 국민은행가입자는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 다만, 전용85㎡이하 주택 신청자의 경우 에는 주택공급신청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됨.

○ 신청시간

인터넷 신청시간은 신청접수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순위별 최종 신청일 마감시간까지 청약을 완료(저장 기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시 최종확인을 완료 하시면 수정이 불가능하고 신청 후 취소는 해당순위 신청 마감일시까지만 가능하니 신청서 작성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해당순위별 신청마감 일시 전에는 야간에도 인터넷청약 가능합니다.

나. 방문인터넷신청 안내

〈 방문인터넷 청약은 대기시간이 장시간(3~6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가급적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로만 청약받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청약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바랍니다. 〉

- 인터넷설치장소 : SH공사(지하철 3호선 대청역이용)
- 신청기간 : 순위별 청약기간 및 방문인터넷 창구 운영시간 참조
- 청약방법 :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고객은 청약신청 위임장을 작성(청약을 위임)할 경우 공사 직원이 인터넷청약을 대행(이 경우 청약에 장시간 소요예상)할 예정임.

※ 청약위임시 제출서류

- 직계가족 및 배우자가 신청시 : 대리신청인(신분증),
신청인(신분증, 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제3자 신청시 : 위임장(신청인의 인감 날인) 1통, 신청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1통 및 인감도장,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7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13.10.11(금) 13:00
 -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www.shift.or.kr) 및 SH공사 게시판
 - ※ SH공사 홈페이지상 “당첨자 조회하기”에서는 서류심사대상자 조회가 불가능하오니 공사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란에 게시된 명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서류 제출기간 2013.10.14(월) ~ 2013.10.23(수), 09:30~17:00
 - 마곡4~7,15단지 신청자 - 2013.10.14(월) ~ 2013.10.16(수), 09:30~17:00
 - 세곡2-3,4, 양재2단지 신청자 - 2013.10.17(목) ~ 2013.10.21(월), 09:30~17:00
 - 내곡1,3,5, 신내3-1, 기타단지 신청자 : 2013.10.21(월) ~ 2013.10.23(수), 09:30~17:00
- 심사서류 제출장소 : SH공사
- 동호추첨 참관신청 : 동호추첨의 투명성제고를 위하여 동호추첨 참여 희망자는 심사서류제출 시 참관신청을 할 수 있으며, 참관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참관 접수 선순위 신청자기준으로 선정.

○ 제출서류

〈서류심사 대상자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위 심사서류 제출기간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자에서 제외되며, 제출한 서류 및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조회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필요시 보완서류 제출 요청)하여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예정이며, 공고일이후 발급가능한 모든 서류는 공고일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바랍니다.〉

① (국민)주택공급신청서(또는 순위확인서) 1통

〈해당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발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or.kr), 단, 국민은행 가입자는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

- ※ 주택공급신청서는 해당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신청하는 것으로 주택공급신청서 미제출자(기타 대체서류 미인정)는 청약취소 또는 탈락되오니 반드시 사전에 주택공급신청서를 발급받아 준비하여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가입형태(본인선택)에 따라 해당주택에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해당 입주자 저축가입은행에 반드시 확인 필요
- ※ 다만, 전용85㎡이하 주택 신청자는 주택공급신청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며, 주택공급신청서는 해당순위 청약신청 접수기간 이후 발급이 어려우니 반드시 사전에 준비

② 가족관계증명서 1통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필요시 부양가족 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및 국내거소신고증 등 해당서류 추가 제출

③ 임신진단서(원본, 임신 주수 및 태아수 기재분에 한하며 부양가족, 미성년자녀수 등에서 임신중인 태아를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제출) 1통

- ※ 입주자 모집공고일이후 발급된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임신 주수 및 태아수 기재)에 한하며, 임신확인서, 진료내역확인서는 제출불가

④ 가점대상자 준비서류(해당자만 제출)

가 점 대 상 자	제 출 서 류	발 급 처
중소제조업체근로자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의 중소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 제조업인 개인사업장 종사자도 신청 가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제조업체가입분)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또는 공고일에 속한 달의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 직인날인)	해당(기관)직장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통지서	동주민센터

가 점 대 상 자	제 출 서 류	발 급 처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해당구청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
국토교통부장관(서울시장)이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증빙서류	해당기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가입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1년(252일)이상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자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 지참)	건설근로자공제회 (☎1666-112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통지서	동주민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통지서 등)	해당기관, 동주민센터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등록일 반드시 기재)	해당구청, 동주민센터

⑤ 우선/특별공급 대상자 준비서류(우선/특별공급 신청자에 한함)

우 선 공 급 대 상 자	제 출 서 류	발 급 처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장애인 증명서(등록일 반드시 기재)	동주민센터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 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남북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남북피해자 확인서	통일부 (☎2100-5917)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5년이상(경력포함)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제외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부동산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캠프링 및 베틀업 등)	중소기업장기근속자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대상자확인서 (대상자여부는 청약전 미리 확인바라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부터 청약신청기간까지 발급)	중소기업청 (☎509-6790)

우 선 공 급 대 상 자	제 출 서 류	발 급 처
(1)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이상 재직중인 자 (2)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6개월이내에 90일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 (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현 사업장에서 6개월이상 노무제공중인 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 (우측의 해당기관에 신청하여 발급 받음)	(1)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공공(지청) (2)거주지 관할 지방고용(지청) (3)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소년소녀가정으로 시장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시장, 구청장 추천서	거주지 시(구청)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통지서	동주민센터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 조부모/친인척으로 시장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시장 · 구청장 추천서	시청, 구청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6개월이상 입소 확인서, 여성가족부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시설 2년이상 입주 확인서	시,군,구청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중 자격상실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자격상실확인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	-해당관리사무소 -동주민센터
신혼부부 우선(특별)공급 신청자	- 혼인관계증명서, 자녀의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원본(임신 주수 및 태아수 기재)	동주민센터, 의료기관

⑥ 혼인관계증명서[전용49㎡형(서초네이처힐1), 전용59㎡형(마곡4,6,7,15, 세곡2-3, 내곡1,3,5, 양재2), 전용60㎡초과 주택형 또는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신청자 중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⑦ 개인정보 수집 · 처리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류심사용)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시 SH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가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

※ 위 제출서류이외에도 서류심사상 필요시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8 동호추첨 및 당첨자 발표

가. 동호추첨

- 주택의 동.호는 신청유형별로 동별, 층별, 향별, 형별 구분없이 무작위 전산추첨하며, 이 경우 추첨을 위한 난수는 청약자중 선정된 참관인이 무작위 추첨하여 선정함.
- 신청유형별로 신청자의 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급세대수의 50%내외의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여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시 예비순위에 따라 공급함(예비입주자 순위는 당첨자와 함께 게시하고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는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까지임)
- 공급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추가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된 세대수를 포함하여 해당주택의 당첨자/예비자, 도시계획철거민 특별공급대상자에게 추첨·공급함.

나. 당첨자 발표

- 당첨자발표 : 2013. 12. 17(화) 10:00
-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www.shift.or.kr) 및 SH공사 게시판
- 서류심사과정에서 서류미제출, 신청자격 결격, 감점 등의 사유로 탈락자가 많이 발생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서류 등의 심사없이 당첨자(예비자)로 발표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시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내에 관련 심사서류를 제출하여 심사통과한 당첨자(예비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세대주 요건등 신청시 신청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주소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자는 당첨자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9 계약일시 및 구비서류

가. 계약장소 : SH공사

나. 계약일시 : 2013.12.20(금) ~ 2013.12.30(월), 09:00~17:00

- 마곡4~7,15, 양재2단지 신청자 - 2013.12.20(금) ~ 2013.12.24(화), 09:00~17:00
- 세곡2-3,4, 내곡1,3,5, 신내3-1, 기타단지 신청자 - 2013.12.26(목) ~ 2013.12.30(월), 09:00~17:00

다. 구비서류

① 계약금 납부영수증 ② 본인도장(본인서명가능) ③ 신분증 지참 및 사본 제출[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처리된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체결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3자가 대리할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인감날인 및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첨부) 제출.

당첨 및 계약 취소되는 경우(주요사항 예시)

- 임신중인 자녀(입양포함)를 부양가족, 미성년자녀로 인정받아 당첨(예비자포함)된 자가 입주시 출산(또는 임신유지) 및 입양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 등인 경우
- 당첨자 발표이전에 동일한 입주자저축통장으로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에 당첨된 경우
- **무주택 세대주, 2인 이상 세대구성, 서울시 계속 거주** 등 자격사항이 공고일 이후 변경되어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 주택소유자로 검색된 자가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당첨(예비)자, 추가 심사대상자 등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미성년자녀 등과 관련하여 감점되어 (예비)당첨 최저 점수 미만인 경우(당첨자는 예비자라도 미공급)
- 계약시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사실과 다르거나, 위조 등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추후 월평균소득이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의 월평균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추후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계약기간내 방문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 서류의 결격 및 미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 해당순위 신청접수일이 아닌 날짜에 신청한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
-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당첨자 발표이후 관계법령위반등 부적격(착오에 의한 당첨 포함)으로 판명 될 경우 등

10 유의사항

- 해당순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는 신청무효 처리됨.
- 당첨자 발표 전후에 주택소유(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부동산 및 차량소유, 소득입증, 가점서류 제출, 심사서류제출기간내 관련서류 미제출 등 입주자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관련사실의 입증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탈락 및 계약 취소됨. 이와 관련하여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서류의 결격, 착오에 의한 당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계약)자가 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 취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본 공고문에 의한 당첨자 발표이전에 동일한 입주자저축통장을 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에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취소됨.
- 주택소유 및 자산보유 여부는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탈락 및 계약 취소(거절)됨.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 제21조의2” 에 의함.
- 주소변경시에는 반드시 SH공사에 변경사실을 통보하여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장기전세주택 등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전세가격이 인상될 수 있음.
- 재계약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주택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에 의거 **임대보증금의 할증 또는 퇴거**되며, 그 외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요건,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음.**
- 1세대(본인+배우자+세대원) 1주택만 신청(재건축매입형을 제외한 전용85㎡초과형 일반공급은 1인 1주택 신청가능)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단,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중복 신청 가능)됨
- 주택신청시 기재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 함.** 입주시까지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 입주자격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특히,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세대주변경 불가)이어야 하고, 전용40㎡초과 임대주택 신청자는 공고일 이후 계속하여 2인이상 가구이어야 함**(다만, 입주자모집

공고시 해당 사군자치구에 공급되는 주택중 전용40㎡이하의 주택이 없는 경우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전용50㎡미만인 주택도 단독세대주 로 거주가능) 또한, 공고일이후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함(위반할 경우 결격 처리).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정정 불가능(특히, 가점사항 등을 실제보다 낮게 또는 불리하게 신청한 경우 이후 수정 불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 이 주택은 양도, 전대할 수 없으며 이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하며, 공고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계법령, 공사홈페이지 공고내용, 공사에서 배부하는 공고(안내)문 등을 참고.
- 사회보장정보(범정부)시스템에 의한 조사확인 절차상 이의신청기간내 소득자료의 미제출 등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됨
- 잔여공기는 기존 입주자의 퇴거, 미계약 등으로 발생된 공기를 재공급하는 것으로 도배, 장판 등 일부 마감재의 파손 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손부분은 공사에서 교체하나 각 마감재 전체의 교체를 원할 경우에는 입주자 본인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함. 공가 현황은 당첨자 발표후 계약체결전까지 해당주택에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음.
- 주택소유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은 공고문 후단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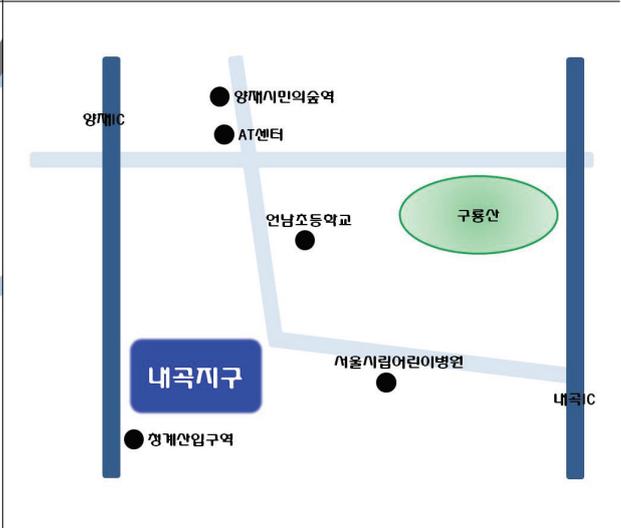
11 임대신청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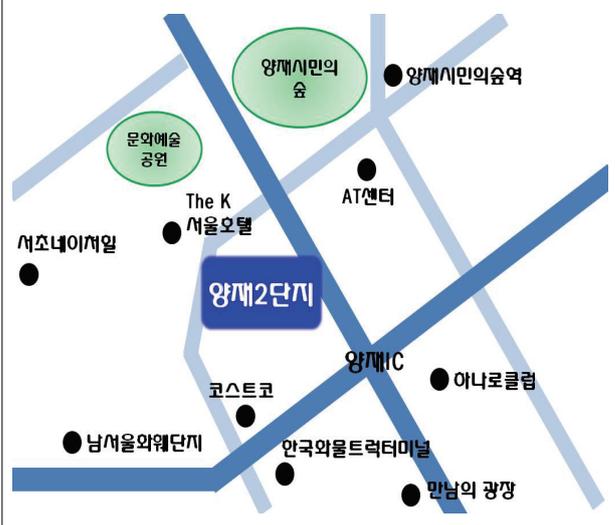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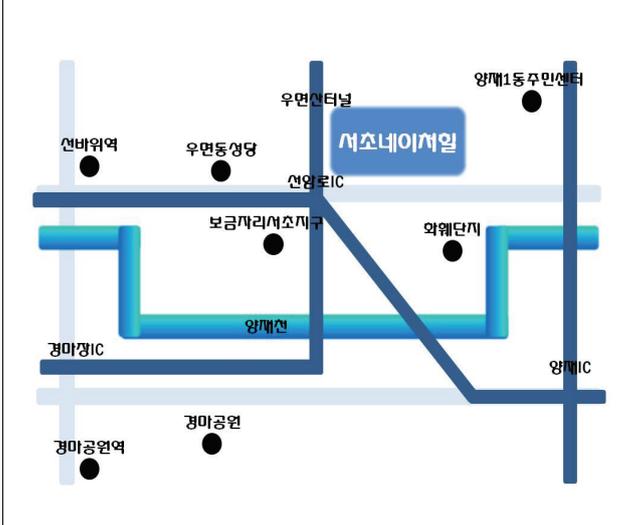
- 청약관련 문의 : 1600-3456(시프트 콜센터)
- 당첨자 확인 :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www.shift.or.kr) 및 SH공사 게시판
- ※ 유선(전화)확인 은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SH공사 시프트 홈페이지 및 1층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견본주택 및 현장안내

- 금회 신규공급단지중 신내3-1단지(59㎡, 84㎡, 101㎡형)에 한하여 견본주택을 공개합니다(공개동호 : 다음표 참조) 그 외 단지와 기존에 입주완료된 단지에서 퇴거등으로 발생한 공가는 견본주택 미공개 합니다.
- 다만, 현장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하여 금회 공급되는 모든 단지에 대하여 전자팸플릿(또는 내부 인테리어 사진)을 공개하오니 SH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좌측항목 '장기전세주택' 메뉴상 '전자 팸플릿'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전에 현장 주변여건을 확인하여 입주에 불편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잔여공가 공급단지에 대한 전자팸플릿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시 제작된 것으로 이후 개발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내용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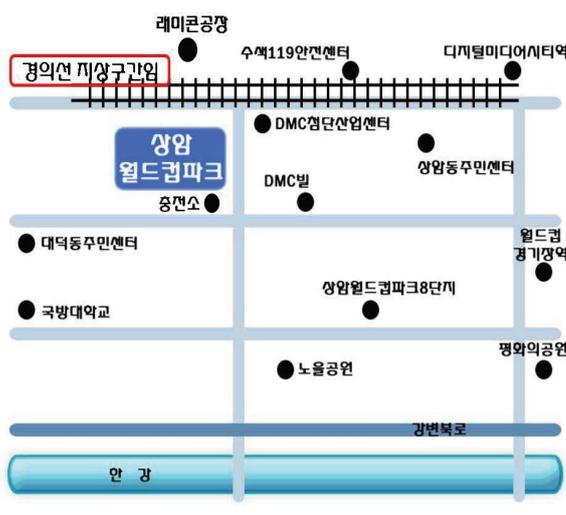
구 분	신내3지구1단지	마곡지구4,5,6,7,15단지
위 치	중랑구 신내동	강서구 마곡동
교통편	봉화산역(6호선)3번 출구에서 버스2223승차 후 중랑공영차고지정류장 하차 후 도보10~15분	4단지:마곡나루역 1번 출구 5,6,7단지: 신방화역(9호선) 5번 출구 15단지: 마곡역(5호선) 1번 출구
견본주택 운영	운영기간 : 2013.09.28(토)~09.29(일) 10:00~17:00 공개동호 : 59㎡(109동508호), 84㎡(102동404호), 101㎡(102동501호)	현장여건상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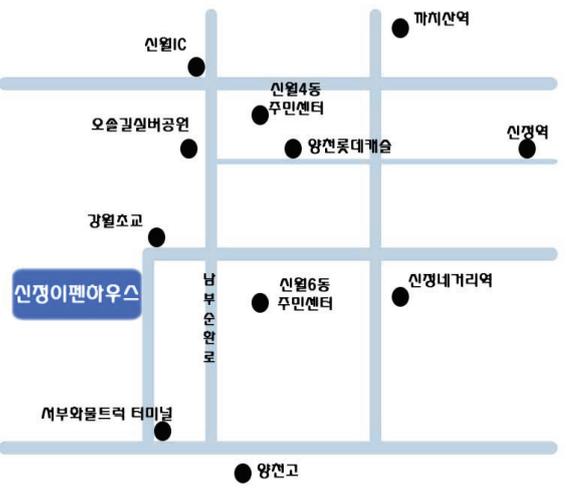
구 분	세곡2지구 3,4단지	내곡지구1,3,5단지
위 치	강남구 율현동	서초구 내곡동
교통편	수서역(3호선)6번출구 강남(06-1)버스승차후 못골마을,보금자리홍보관 하차	청계산입구역(신분당선)1번출구에서 도보5~10분
건본주택 운영	현장여건상 건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현장여건상 건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약도		

구 분	양재2단지	서초네이처힐1단지
위 치	서초구 양재동	서초구 우면동
교통편	양재역(3호선,신분당선) 10번출구에서 서초08번 승차 교육문화회관후문 하차 양재시민의숲(신분당선)5번출구에서 도보15분~20분	서초네이처힐1단지:양재역(3호선,신분당선) 10번출구에서 3412번 승차 후 형촌마을하차 서초네이처힐3단지:선바위역(4호선)1번출구에서 마을버스18번 승차 후 성촌마을하차
건본주택 운영	현장여건상 건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현장여건상 건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약도		

구 분	역삼3차아이파크	고덕리엔파크1,2,3단지
위 치	강남구 역삼동	강동구 강일동
교통편	선릉역(2호선,분당선)4번출구 도보7분	고덕리엔파크1,2단지: 상일동역(5호선)3번출구에서 버스(340,3413,3412) 승차 후 아파트앞 하차 고덕리엔파크3단지: 상일동역(5호선) 4번 출구에서 버스(3411) 승차후 고덕리엔파크3단지하차
건본주택 운영	현장여건상 건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현장여건상 건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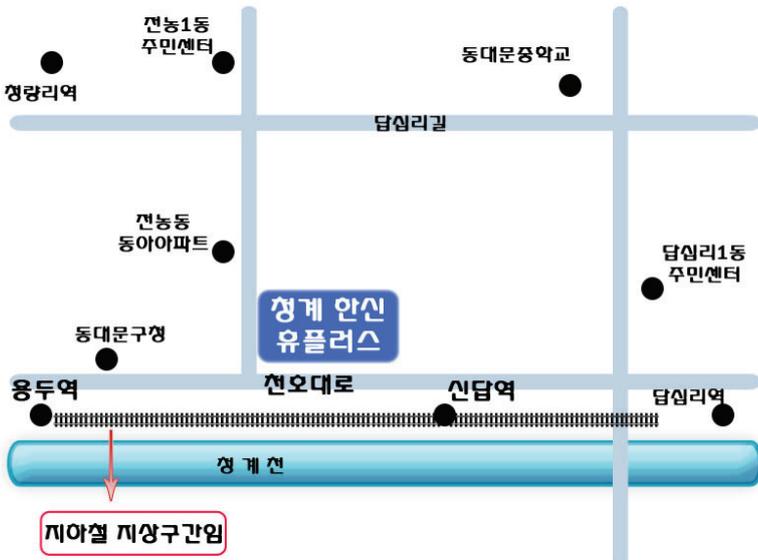
구 분	묵동리본타워(묵동시프트)	발산(마곡수명산파크)3단지
위 치	중랑구 묵동	강서구 내발산동
교통편	화랑대역(6호선)6번출구 도보1분	마곡역(5호선) 1번출구에서 도보15~20분
건본주택 운영	현장여건상 건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현장여건상 건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약도		

구 분	상암월드컵파크11단지	세곡리엔파크2,3단지
위 치	마포구 상암동	강남구 세곡동
교통편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공항철도)4번 출구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정류장에서 7726버스 승차 'DMC첨단산업단지' 정류장에서 하차	수서역(3호선) 6번 출구에서 버스(강남06-1)승차, '세곡리엔파크단지'에서 하차
건본주택 운영	현장여건상 건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현장여건상 건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약도		

구 분	신정이펜하우스1,3단지	은평1지구
위 치	양천구 신정동	은평구 진관동
교통편	신정네거리역(2호선)3,4번출구에서 버스 (6614,양천03번)승차, '신정이펜하우스단지' ' 하차	구파발역(3호선) 1번출구에서 버스(7723,7211,704,8772)승차 후 아파트앞에서 하차
건본주택 운영	현장여건상 건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현장여건상 건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약도		

구 분	장지(송파파인타운)6,9단지	천왕이펜하우스5단지
위 치	송파구 장지동	구로구 천왕동
교통편	장지역(8호선) 1번출구에서 도보 10분	천왕역(7호선) 1번출구에서 도보로 15분
건본주택 운영	현장여건상 건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현장여건상 건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약도		

구 분	강서동부센트레빌4차	강서센트레빌3차
위 치	강서구 공항동	강서구 방화동
교통편	송정역(5호선) 4번출구에서 도보 10분	신방화역(9호선) 2번출구에서 직진 도보10분
건본주택 운영	현장여건상 건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현장여건상 건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약도		

구 분	청계한신휴플러스
위 치	동대문 답십리동
교통편	신답역(2호선) 1번출구에서 도보10~15분 용두역(2호선)3번출구에서 도보15분
건본주택운영	현장여건상 건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약도	 <p>The map illustrates the project location within the Dongsimri neighborhood. Key features inclu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oject Location: '청계한신휴플러스' (Cheonggye Hanshin Hyu Plus) is marked with a blue box in the center. Transportation: '신오대로' (Sino-dae-ro) runs horizontally through the project area. '신답역' (Shindap Station) and '용두역' (Yongdu Station) are located on the southern side. Landmarks: '전농1동 주민센터' (Jeonong 1-dong Community Center) and '전농동 동아아파트' (Jeonong-dong Donga Apartment) are to the west. '동대문중학교' (Dongdaemun Middle School) and '답십리1동 주민센터' (Dapsimri 1-dong Community Center) are to the east. Infrastructure: '경계선' (Boundary Line) is shown as a thick blue horizontal bar at the bottom, with a red arrow pointing to '지아셀 지상구간임' (Ziasel Ground Lease) below it. </p>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 검색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 소유한 경우 또는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인 경우도 주택으로 간주)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5항 6호(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우선공급에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무주택 요건 제외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이상의 직계존속(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제19조 제13항 및 제32조 제5항 1호<노부모 부양>에 따른 특별<우선>공급의 경우 적용 안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4호 관련 별표1)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 포함)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전용85㎡초과 주택에 한함). 이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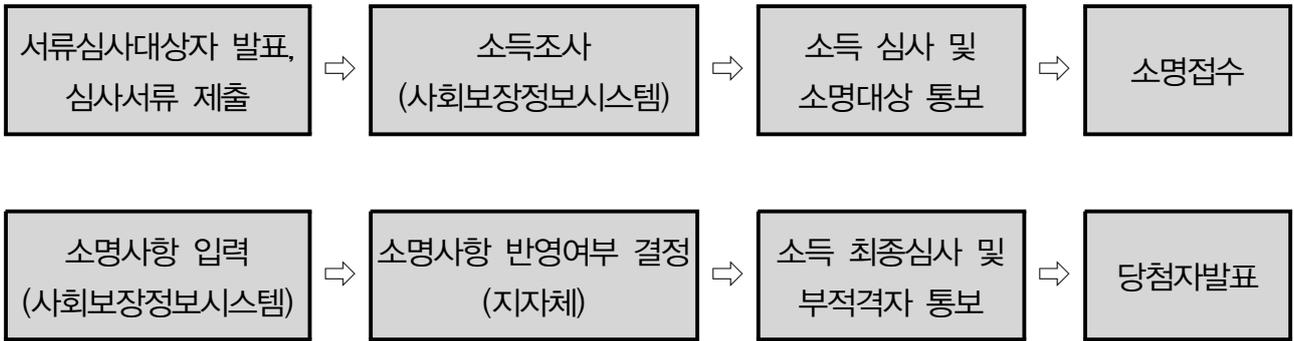
[별표1]

[소득항목 설명 및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 근로 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표준보수 월액(소득신고), 장애인고용공단자료(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고용부담금 신고자료:근로소득),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 근로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활 근로 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 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 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수산물품부 농지원부, 농림수산물품부 농업직 불금
	임업 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 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 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 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이자 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 소득	공적 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가구원의 소득은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 기관 등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심사업무 처리 절차도



- ※ 소득 소명은 우리공사에서 소명접수 대상여부를 판단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며, 지자체 소득 소명시 반영 여부 결정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에 의함.
- ※ 상시근로자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①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②국민연금공단 자료 ③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④국세청 자료 순으로 반영됨.
- ※ 계속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은 전년도에 받은 보수의 총액을 전년도 중 직장가입자가 그 사업장등에 종사한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이며, 위 보수월액은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적용됨.

▶ 소득 소명 반영 여부 주요 예시

소명사항	반영여부
동일사업장 2개이상 소득 중복	반영 (1개소득만 산정)
공고일 이후 소득관련 공적자료 변경	미반영
공고일 현재 휴직자 또는 휴업	미반영 (해당 소득 포함)

- ※ 소명관련 주요사항을 예시한 것으로 소득 종류에 따라 소명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지자체 소명처리 과정에서 반영여부가 최종 결정됨.

2013.09.13

- 단지별 유의사항 -

공통 사항

- 각 타입별 아트월 및 가구, 도배, 목재마루 및 타일마감재, 위생도기 등 마감재의 경우 단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별 동일타입이라도 평면상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팜플릿상 평면도는 건축심의 및 인허가(사업승인) 과정에 따라 구조, 설비 및 발코니 위치, 모양, 면적 및 실구성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공동주택의 다양한 주거유형의 도입으로 단위세대 평형이 상하층간에 다르게 설계된 경우도 발생하며, 동일 평형 중 발코니 면적 및 설치위치가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단지 동배치 및 동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저층 세대에서는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 확인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접한 인접세대는 차량소음, 경보음, 야간차량불빛, 공회전에 의한 매연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외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경우 경사진 도로 및 곡선도로, 주통행도로, 인근산책로, 부대시설이용 등으로 차량전조등 및 소음 등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기계실, 비상 발전기실, 전기실 및 지하주차장은 환기를 위한 급·배기용 환기탑(DRY AREA)이 일부 동 주변에 설치되어 소음 및 냄새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음. 아파트 호·수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설비 등의 설비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분리수거함 및 음식쓰레기 수거함 설치로 인해 인근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유아용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관리동 및 노인정, 보행로, 운동시설, 주민공용시설 등의 설치로 인접에 생활 소음피해, 실내투시로 인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세대의 경우 단지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을 수 있으며, 이삿짐 운반시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함.
- 발코니새시는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였으나, 발코니 새시 설치로 발코니창, 콘크리트 난간 및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차이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자주 환시시켜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라며, 특히 빨래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유의해야 함.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개별보일러,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함.
- 공동생활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건축물 외관, 단지명칭, 호수번호, 외부색채와 계획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협의에 따라 입주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계획은 수급여건 및 현장여건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의 결과에 따라 수종(규격, 수량 등) 및 수목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준공 후 입주민의 인테리어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기 시설물을 임의로 해체 또는 파손시 그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 및 사용상의 문제는 하자보수가 불가하며, 이로 인한 방법상의 문제가 발생시 책임은 입주자 부담임.
- 세대 내부에 설치된 대피공간은 화재 시 비상 대피공간이므로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임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는 SH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공용부의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이설, 증설, 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및 해당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기타 변동사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학급수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교육청에서 단지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는 청약 및 계약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 바람.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현장에 출입 할 수 없음.

신내3지구 1단지

▶ 지구 여건

-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본 지구 외의 기반시설이 입주 시기에 맞추어 건설 중에 있으나 일부시설은 현장 여건에 따라 입주 시까지 완공되지 못할 수 있음.
- 동 지구 내 생활편익 시설인 학교, 공공청사, 근린생활시설 등은 입주 시기에 맞추어 건설추진중 이나 사업추진 및 관계기관의 여건에 따라 완공되지 못할 수 있으며 시설별 추진계획은 해당기관에 문의해야 함.

- 사업지구 남측경계에는 북부간선도로가 근접하며, 서측에는 경춘선이 위치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신내3지구 토지이용계획은 여건 변화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외부여건

- 1단지와 2단지 사이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따른 방재시설인 우수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우수량에 따라 우수지내 수위가 변동될 수 있음.
- 우수지는 재해방재시설로서 향후 조경식재 및 시설물 설치 등이 불가하며 주민안전을 위해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
- 1단지 주변으로 남동측으로 근린공원이 조성될 계획으로 공원이용자에 의한 사생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1단지 남측에 북부간선도로 및 서측에 신경춘선이 인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남측에 인접하여 중랑 공용차고지와 신내 차량기지(전철)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지구 남, 서측으로 약 1km 거리에 서울의료원이 위치하고 있음.
- 1단지 북, 서측에 인접하여 중랑경찰서가 있음.
- 사업지구(북측지구) 지형상 고저차가 25M 발생함.

▶ 단지 내부여건

- 1단지는 경관형 주동으로 하부세대의 천장이나 상부세대의 바닥의 일부가 상하부세대에 테라스로 노출되어 있으나 사용할 수 없는 부분임. - 해당동 : 107동, 108동, 109동, 110동, 111동
- 111동, 112동, 113동, 114동, 115동, 116동 세대 내에서 아파트 부지 외부의 주변 임야에 위치한 묘지가 보일 수 있으나, 해당 임야는 지구외 지역으로 수목식재 등으로 차폐가 불가능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입면다양화에 의한 옥외공간이 비개방공간으로 설계,시공되어 있으나 입주후 개방공간으로 사용할 경우 주위세대에 소음, 사생활침해 등 이 발생할 수 있음.
- 1단지 16개동 전동 지붕층에는 관련법규에서 설치하도록 규정된 피뢰설비가 돌출되어 설치되어 있음.
- 102동 옥상층에는 방송공동수신용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음.
- 일부 동의 옥상에는 신재생에너지 적용에 따라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있음.
- 일부 동 옥상에 이동통신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용 안테나설비가 설치되어 있음.
- 단지내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전기공급시설(개폐기함, 변압기함)이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음.

- 84㎡형이하 임대주택은 모두 확장형이고, 114㎡형 임대주택은 부분확장임. 114㎡형 침실중 일부 침실(침실2,3)은 발코니가 삭제되어 있음.
- 지속가능형 장수명 공동주택 계획을 반영한 라멘구조 적용으로 발코니 천정부분에 보가 노출되며, 노출된 보로 인해 천정형 빨래 건조대의 위치가 낮아짐.
- 세대내 별도의 에어컨 실외기실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에어컨 실외기 작동시 외부 창호를 개방하여 사용해야 함.
- 신내3지구 유치원 · 초등학교 설립 및 중학생 배정계획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교육청(동부교육지원청)에 문의 바랍니다.

– 유치원 · 초등학교 각 1개소 설립 계획

구분	위치	학급수	학생수 (원아수)	급당 인원	개원(교) 예정일	설립사유
가칭 "서울신삼 유치원" 신설	중랑구 신내동 242-1 일원	7(1)	154	25.7	2014년 9월	신내3지구 주택개발사업 에 따른 원아 및 학생수 용 대비
가칭 "서울신삼 초등학교" 신설		31(1)	920	30.7	2014년 3월	

– 신내3지구 중학생 배정계획 및 통학여건

배정계획	통학여건(현재)
신내3지구 인근 중랑구 3학군내 중학교 배정	소요시간 20~31분, 거리 1.87~3.53km, 도보 및 버스(1~2회)

※ 중랑구 3학군 중학교 10교

(동원중, 송곡여중, 영란여중, 봉화중, 신현중, 상봉중, 원목중, 장안중, 중랑중, 태릉중)

마곡지구4,5,6,7,15단지

▶ 지구 여건 (지구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취소/조정될 수 있음.)

- 마곡지구 서측으로 약 2km 거리에 김포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항공기 항공기 소음 및 전파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 마곡지구내 계획된 학교는 지구계획 변경 및 해당 교육청 또는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마곡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지구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마곡지구내 기반시설은 향후 심의 및 인허가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은 사업추진과정 중 지구계획 변경(각종 영향평가 포함)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의 사업추진과정에서 제반여건 변동에 따라 당초 추진계획이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4단지

- 405동 후면에 민가가 인접하고 있음.
- 405, 7동 1층 일부세대 부대시설 및 근린시설이 옥상층과 인접함(폐쇄형 난간설치).
- 403, 4, 5동에 한솔 솔파크 아파트가 인접하고 있음.
- 영구배수 시스템용 배수펌프 불특정시간 가동으로 인해 소음발생 예상되며, 전기료는 입주자 부담임.
- 404동 지하층에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설치로 인해 가동시 소음 및 진동발생 예상됨.
- 마곡지구 4단지는 분양 및 임대 혼합으로 구성됨
- 엘리베이터는 기계실 없는 방식으로 설치예정으로, 최상층세대는 소음 및 진동 전달이 될 수 있음
- 단지 서측에 서남물재생센터가 위치하고 기상여건에 따라 악취발생의 우려가 있음
- 전 세대 확장형 세대이며, 거실 및 침실의 외부 고정창은 안전유리(접합복층유리)설치 예정
- 마곡지구 4단지 전면은 향후 업무시설 계획예정지임.
- 지하주차장은 지하3층이므로 지하2, 3층은 결로발생이 예상됨.

▶ 5단지

- 지하철 9호선에 근접한 아파트 501,502동,508동은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단지 외곽에 위치한 501,502,503,505,506,507,508동은 15M,18M,20M,38M의 도로가 인접해 있어 교통발생량에 따라 소음발생 우려가 있음

▶ 6단지

- 603,604,605동 북측 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 측 세대 인접 도로 및 상가 소음 발생우려 있음.

▶ 7단지

- 마곡지구 7단지 동측으로 지하철9호선에 근접한 아파트 712동 및 713동 (오피스) 및 공항철도가 인접한 704동은 지하철9호선 및 공항철도 운행횟수에 따라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15단지

- 1512, 1513동은 전면도로(31m 도로)에 인접한 세대는 통행차량에 의한 소음 발생 우려가 있음.

세곡2지구3,4단지

▶ 지구여건

- 사업지구(북측지구) 입구 주변 지하철 3호선과 남측지구 4단지 북동측으로 지하철 분당선이 지하로 통과하고 있어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3단지, 4단지 남측 22m도로 건너편에 성당부지와 남서측에 교회와 사찰이 위치하고 있음
- 4단지 동측 탄천변으로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어 전자파 발생, 전파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 탄천물재생센터가 지구(북측지구) 북측 약 1.2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남측지구) 남동측 약 0.8km 거리에 성남하수처리장이 위치하고 있음.
- 사업지구(북측지구) 북동측으로 약 0.6km 거리에 소각시설과 북측 약 0.9km 거리에 강남자원회수시설이 위치하고 있음.
- 사업지구 남측에 인접하여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및 동측 약 0.3km 거리에 송파구 청소작업기지가 위치하고 있음.
- 사업지구 남측에 인접하여 강남자동차매매시장이 위치하고 있음.
- 사업지구 남측으로 약 1km 거리에 서울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 및 전파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지구 북측에 인접하여 수서차량기지가 위치하고 있음.

- 향후 개통예정인 KTX(수도권 고속철도)가 3단지과 4단지 사이를 지하로 통과하여 건설될 예정으로 철도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지구 주변 주요 도로망인 광평로, 문정로, 밤고개길(국지도23호선), 밤고개길~동남권유통단지길, 서측 약 0.3km거리에 위치한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의한 도로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신교통수단(도로 등)이 계획수립 중으로 지구내외 관련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지구 북측에 인접한 문정로의 선형 계획이 변경(고가차도 등) 될 수 있어 소음, 진동 및 자동차 전조등 불빛으로 인한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3단지, 4단지는 2014년 상반기 준공으로 입주 후 주변단지 및 기반시설 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진동 등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4단지 남측 제4호 근린공원 내에는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에 따른 방재시설인 저류지가 계획되어 있음
- 3단지, 4단지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을 혼합(Social Mix) 배치 하였음.
 - 동일한 단지내에 혼합건립(Social Mix)하며 동에 따라서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같은 동에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단위세대 구조형식은 장래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인 3단지 무량판 구조, 4단지 라멘구조로 설계하였으며, 단위세대 내부 일부 코너부분 및 발코니 등에 기둥 및 보 등 돌출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지구 동남측에 서울공항 및 공군 제15 혼성비행단이 위치하여 항공기 소음이 심하게 발생하는 지역(특히, 비행기 에어쇼 연습기간 및 에어쇼 기간에는 상당히 심한 소음 발생)으로서 청약 전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세곡2지구 단지 상공으로 항공기 운항이 주기적 또는 비주기적으로 실시되며 항공기 종류 및 운항 고도에 따라 실내소음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음.
 - 항공기 소음과 관련하여 추후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식이 방해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등화의 설치를 금지함.(옥탑 등 야간 조명시설 제한함)
- 항공기 운항의 방해가 되는 연막, 증기발산, 색채유리, 기타 반사물체의 진열 및 설치를 금지함.
- 항공기 운항 시 TV수신 감청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음.
- 일부 동 옥상에는 TV 및 위성 수신용 안테나가 설치되며, 고도 제한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항공기 운항 시 통신전자 장비에 대해 전파영향을 미치는 장비/시설(고출력장비, 고전압 전파방해 등)의 설치를 금지함.
- 전시 또는 유사시 부대 작전수행을 위해 아파트 옥상에서 전방 관측/지휘를 위한 일체의 군사행위와 제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군부대(육군 제7273부대)의 요구시 군부대와 건축주 간 협정서를 체결해야 함.

▶ 3단지

- 3단지 동측으로는 고속철도(KTX)가 통과하여 진동 및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접한 지하구조물 바닥 및 벽체에 방진패드를 설치하였으나, 일부 진동 및 소음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음.
- 4단지로부터 연결된 보행공간(가로광장)은 단지 동측에 위치한 학교의 통학로이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등에 있어 타동에 비해 불리함.
- 301동은 경관형 주동으로서 하부세대의 천장이나 상부세대의 바닥의 일부가 상부세대에 실외공간으로 되어 있으나, 아파트 경관을 위한 구조로서 안전상 사용할 수 없는 부분임. 임의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등 제반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4단지

- 4단지 서측으로는 고속철도(KTX)가 통과하여 진동 및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접한 지하구조물 바닥 및 벽체에 방진패드를 설치하였으나, 일부 진동 및 소음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음.
- 3단지와 연결된 보행공간은 3단지 동측에 위치한 학교의 등하굣길이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등에 있어 타동에 비해 불리함.
- 412~417동 후면에는 소음 저감을 위해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음.

내곡지구1,3,5단지

▶ 지구여건

- 내곡지구 남서측으로 경부고속도로가 연접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내곡지구 남동측 약1km거리(1단지 기준)에 강남,서초/강동,송파예비군훈련장에 소속된 사격연습장이 위치하고 있어 예비군 사격훈련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내곡지구 중앙 경관녹지내에 5단지와 인접하여 묘지가 위치하고 있음
- 내곡지구 서측으로 약 1km거리에 원지동 서울추모공원 화장시설이 있음
- 내곡지구 동측으로 약 4km거리에 서울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항공기 소음 및 전파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 내곡지구 동측으로 약 350m거리에 서울특별시립 어린이병원이 위치하고 있음.
- 내곡지구 남측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 주변으로 등산객을 위한 음식점, 등산용품 판매점 등이 위치하고 있음.
- 1단지 동측으로 어린이공원과 경관녹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흥씨마을이 위치하고 있음. 서측으로 초등학교가 계획되어 있으며, 남측으로는 인릉산과 연접하여 있음, 북측에는 자족시설 및 공공청사가 계획되어 있음
- 2단지 동측으로 주유소와 자족시설이 계획되어 있음.
- 3단지 동남측으로 주차장과 종교시설, 유치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남서측으로는 저류지 및 경관녹지가 계획되어 있음.
- 3단지 동남측 및 북동측 연결녹지에 휴게시설이 있어 소음 및 사생활권 침해 등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5단지 동남측 연결녹지에 휴게시설이 있어 소음 및 사생활권 침해 등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6단지 남서측으로 복합환승센터와 호텔, 도시형 생활주택이 계획되어 있음
- 7단지 동측으로는 사회복지시설 및 소공원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단독주택지가 위치하고 있음, 남서측으로 준주거용지가 계획되어 있음.
- 내곡지구내 기반시설은 향후 심의 및 인허가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구내 1,2,3,5,6단지와 연접해 있는 소하천(여의천)은 건기시 건천상태이며, 여의천 및 지구내 도로는 완료되어있지 않을 수 있음.
- 지구내 상수도망 완료시기 상이로 인하여 일정기간 수압이 약할 수 있음.

▶ 1단지

- 단지별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지중화 전력공급시설(개폐기함, 변압기함)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 서 보일 수 있음.
- 진출입구 2개소가 북측면에 편향배치 되어 있고 주출입구의 진출입 차선은 3개임. 단지는 남북으로 약 500M, 동서로 약150M의 긴 장방형이고, 남과 북의 레벨차가 약 50M로 지하주차장 내 경사램프 이동구간이 많아 단지 남측에 면한 동일수록 동 진입 및 지하주차장 이용에 큰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1층 인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남측에 면한 동은 이동거리가 상당할 수 있음.
- 외부 입면변화에 의해 돌출되어 발생하는 하부세대의 지붕을 상부세대 입주민이 출입 불가함.(109동~114동 제외)

▶ 3단지

- 도로와 단지의 지표면 레벨차이로 인해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3단지 남측으로 어린이공원이 계획되어 있어 305동 일부세대 전면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어린이 공원과 연결되고 306동 일부세대 전면이 어린이공원과 인접하여 소음 및 사생활권 침해 등 불편 사항이 있을 수 있음

▶ 5단지

- 도로와 단지의 지표면 레벨차이로 인해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음.

양재리본타워 2단지

▶ 단지여건

- 단지내 상가는 없으며, 일부 부대복리시설이 있음.
- 양재리본타워 2단지는 경부고속도로변에 면하여 소음 및 매연으로 인한 환경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203동 1,4,5,6호 라인 저층부는 인접 방음벽으로 인한 통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시야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별동으로 계획된 복지관과 마주보고 인접한 202동 1,2호 라인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침해 등 생활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발코니창 하부가 고정창으로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하여 모든 층의 이사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함.
- 양재리본타워 2단지는 거실과 침실2(또는 침실3)의 발코니를 확장하여 공급함.
- 부대시설의 냉·난방 열원은 신재생에너지인 지열에너지가 적용되었으며, 이의 사용에 따른 전기료 등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양재리본타워 2단지는 초고층 아파트로 욕실 및 주방의 원활한 환기를 위해 옥탑에 별도의 강제 환기팬이 적용되었으며, 이의 사용에 따른 전기료 등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양재리본타워 2단지는 우수사용을 위해 우수조가 적용되었으며, 이의 사용에 따른 전기료 등 유지 관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서초네이처힐1단지

- 일부 최상층 세대는 채광 등을 위한 특화설계로 거실 천정고가 동일한 타입의 일반세대에 비해 높고, 천정 벽부분에 채광을 위한 창문이 설치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인해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피트니스센터, 수영장 등 커뮤니티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 세대 내부에는 아래와 같이 가전제품 및 가구가 설치되어 있음
 - 가전제품 : 냉장고, 세탁기
 - 가구 : 거실장, 거실소파, 식탁 및 의자, 책상(책장) 및 의자, 침대, 화장대(49㎡타입만 설치), 화장대의자, 커튼

역삼3차아이파크

- 입주일은 현재 2014년 1월말이나 난방방식 변경(개별난방 → 지역난방)공사로 인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장기전세주택 세대는 침실 확장공사를 하지 않으며 외부의 PL창호 단창은 전체적으로 시공됨.
- 조합분양주택과 비교하여 일부시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잔여공가 공급세대 입주자 유의사항

잔여공가 입주자 유의사항은 중요사항만을 요약하여 안내하였사오니 입주자께서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여건 등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에 게재한 전자팸플릿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작된 것으로 개발계획변경 등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덕리엔파크 인근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2단지 일부 동은 지하철 5호선 지상철로와 인접하여 지하철 운행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고덕리엔파크 인근에 고덕강일보금자리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보금자리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 등의 생활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묵동시프트 사업부지 내 공개공지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시설임
- 묵동시프트의 서쪽으로 태릉고등학교와 인접해 있어 소음 등의 생활 불편 사항이 있을 수 있음.
- 발산지구(마곡수명산파크) 인접지역에 김포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항공기의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 및 전파장애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마곡수명산파크 서측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위치하고 있어 악취 및 야간 불빛 등으로 인한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오수중계펌프장이 위치하고 있어 악취가 발생할 수 있음
- 상암월드컵파크 인근에 한국항공대와 육군항공부대, 인천공항철도 및 래미콘공장이 위치하여 소음, 진동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근에 난지하수처리장이 위치하고 있어 하수처리로 인한 냄새가 날 수 있음
- 서초네이처힐 인근에 우면산 터널이 있고 남측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건설될 예정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서초네이처힐 인근에 서초구에서 시행예정인 양재R&D 특정개발진흥지구(연구시설, 도시지원시설)가 지정되어 있고, 인근에 서초보금자리지구가 건설 중에 있어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서초네이처힐 인근에 송전탑(C/H) 2개소가 설치되어 있음.(7단지 서측 소하천 맞은편, 3단지와 한 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이 녹지구간 내)
- 서초네이처힐 남측 경계의 근린공원3 내에 액화석유가스충천소 부지가 있음.

- 세곡리엔파크 인근에 서울공항 및 공군비행장이 위치하여 항공기 소음이 심하며 비행기 에어쇼기간에는 상당히 심하게 소음이 발생함. 또한 단지 상공으로 항공기 운항이 주기적으로 실시되며, 항공기 운항고도에 따라 실내소음도가 45db을 초과할 수 있음.
- 신정이펜하우스 인근에 김포공항이 위치하여 항공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정이펜하우스 2단지 서측에 열병합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임. 또한 지구 남동측에 양천권역공영차고지 및 서부화물터럭터미널이 위치하여 이로 인한 교통, 소음 등의 생활불편이 예상됨
-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 내에는 버스차고지, 택시차고지, 폐기물처리시설, 열공급시설, 자원회수시설 등 설치계획이 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람.
-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 내, 창릉천변 및 인접 공원용지에 기존의 군 방호벽, 군 진지, 군 막사 등의 기능 대체시설로 설치되는 군사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에 인접한 기존의 군부대 및 군 관련시설(훈련장, 사격장 등)에서 군사 훈련, 작전 및 시설유지를 위하여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 제반 환경 및 기타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은평뉴타운 1지구 생태하천은 건기시 건천상태일 수 있음
- 장지지구(송파파인타운) 인근에 서울공항이 위치하여 항공기 이착륙 및 방향전환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외곽순환고속도로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송파파인타운 인근에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음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천왕이펜하우스 인근에 구치소, 교도소 등 영등포교정 대체시설이 설치되고, 인근에 천왕차량기지가 위치하여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함.
- 천왕이펜하우스 인근에 개발중인 천왕2지구 건설공사 및 천왕이펜하우스 7단지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 및 일조권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학교배정, 개교시기 등은 관할 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매입형 장기전세주택의 경우에는 조합분양주택과 비교하여 일부시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알 림

계약종료 전·후 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아래와 같은 대출 상품(잔금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무담보 전세자금 대출 최대 1.8억까지)

구 분	계약종료전 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서울시 기금)	계약종료후 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국민주택 기금)
대출 대상	SH공사 임대아파트에 당첨됐으나, 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 ※ 소득요건 없음	계약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SH공사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 ※ 보증금 3억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대출 한도	최대 1.8억원 [구임차보증금 100% 또는 신임차보증금 80%중 적은 금액]	최대 2.22억원(전세보증금 3억 이내 주택) [구임차보증금 100% 또는 신임차보증금 90%중 적은 금액]
대출 기간	원칙 : 구임차주택 계약종료일 (집주인 미반환시 연장가능 : 임대아파트 최초 계약종료일)	원칙 : 신 임차주택 계약종료일 (상환능력별로 대출기한 연장 가능)
상환 방법	일시상환	일시상환
대출 이율	• 고정금리 3% ⇒ 중도상환수수료 · 보증료 · 대출수수료 면제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4.24%) 선택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유의사항

- 상기 두 대출 상품은 서울시청의 용자추천을 통해서만 대출이 가능
-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 내용이 달리 적용될 수도 있어 내방하여 안내 필요



서울시청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02) 2133-1200~1208

희망서울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무담보 전세자금 대출 (최대 1.8억원까지)

문의 : 서울시청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02) 2133-1200~1208
(앞페이지 안내사항 참조)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135-988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www.i-sh.co.kr

콜센터 02-1600-3456